

건강진단 실시에 대한 한시적 지침 관련 Q&A

1. 건강진단 실시에 대한 한시적 지침이 적용되는 대상은?

- 「식품위생법」, 「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」, 「축산물 위생관리법」에 따라 건강진단을 받아야 하는 영업자 및 종업원이 대상입니다.

2. 기존 영업자 및 종업원의 전년도 건강진단 검진일이 5월 31일인 경우 언제까지 건강진단을 받으면 되나요?

- 건강진단 실시에 대한 한시적 지침에 따라 건강진단 검진일이 2월 17일부터 5월 31일 사이에 도래한 대상자는 1개월 연장됩니다.
* (예시) 2019년 검진일이 4월1일인 경우, 2020년4월30일까지 건강진단 실시
2019년 검진일이 5월31일인 경우, 2020년6월30일까지 건강진단 실시

3. 전년도 건강진단 검진일이 6월 1일인 경우는 지침에 적용되나요?

- 건강진단 실시 한시적 지침은 영업자 및 종업원이 건강진단을 받는 보건소의 감염병 대응 업무 집중에 따라 부득이하게 건강진단 실시 기간을 한시적으로 연장한 것이나, 감염병 확산에 따라 식품을 취급하는 종사자들의 개인 위생관리 및 건강관리가 더욱 중요한 시기입니다. 따라서, 식품을 취급하는 종사자들은 연장된 기간 내에 차질 없이 건강진단을 실시하고 영업에 종사하여 주시기 부탁드립니다.
- 동 지침은 2019년도 건강진단 검진일 기준 2월 17일부터 5월 31일까지 적용되며, 현재는 추가적 연장을 검토할 계획이 없습니다.

4. 건강진단은 어디서 받을 수 있나요?

- 「식품위생 분야 종사자의 건강진단 규칙」 제3조에 따라 건강진단은 「지역보건법」에 따른 보건소 뿐만 아니라 「의료법」에 따른 종합병원·병원 또는 의원에서 실시할 수 있으므로, 개인 위생관리 및 감염병 확산 방지가 중요한 시기인 만큼 식품을 취급하는 종사자들은 연장된 기간 내에 차질 없이 건강진단을 실시하고 영업에 종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
- 또한, 상기 규정에 따라 의료기관이 해당 영업소에 방문하여 다수의 인원에게 건강진단을 실시하는 경우에는 밀집도를 고려하여 시차를 두어 실시하는 등 대인 접촉을 최소화하기 위한 조치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